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23일 경제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9월 13일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9월 13일

다. 상정일자

- O 제318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 -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(2024. 9. 23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-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서현준 배터리첨단산업과장)
 - 가. 개정이유
 - 산업통상자원부의 법인 정관 개정 승인(2024. 8. 26.)에 따라 포항금속소재 산업진흥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 변경
 - (현행)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
 - (개정)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
- 법인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일괄 정비(안 제1조 ~ 제4조)

3. 관련법령

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적용 범위)
- 「민법」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시업 등

- 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율)
 -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법인 정관 개정 승인(2024. 8. 26.)에 따라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 - 검토결과, 본 조례의 개정으로 (재)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이 금속 소재라는 단일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, 변화하는 지역 핵심 산업 환 경에 맞춰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더 넓은 범위의 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, 명칭과 사업 추진내 용의 정비는 기관의 역할과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여 대내외 적으로 인식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되나,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한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 -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 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- 6. 토론의 요지 : 없 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